

# 북극 스발바르조약의 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



2013. 3. 8

이 용 희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

# Contents

**1** 조약의 체결 배경과 주요내용

**2** 스발바르군도 관리 현황과 조약당사국의 태도

**3**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4** 분쟁 해결방안에 대한 검토

# I. 조약의 체결배경과 주요내용



# 스발바르군도



- 북위 74도~81도, 동경 10도~ 35도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도서
- 육지면적: 62,400km<sup>2</sup>
- 인구: 토착민 비존재, 연구자 및 광업인구 약 2,500명 거주
- 유력한 관광명소와 국제과학기지 및 종자저장소로 유명
- 풍부한 어업자원, 광물자원 부존
- 북극항로 활용시 주요 통로
- 1596년 네덜란드 탐험가가 발견
- 17세기초부터 고래/바다코끼리에 대한 상업적 수렵 개시(영,화,러)
- 19세기 후반부터 1920년대 후반까지 석탄광업 성업
- 무주지로 인해 자원의 남획 등 문제 발생

# 스발바르조약 체결

- 1905년 노르웨이 독립후 스발바르지역 관리에 대한 논의 시작
- 노르웨이, 스웨덴, 러시아 중심의 제1차 논의는 WWI 개시로 무산(무주지 상태로 유지하고 국제공동관리체제 도입방안)
- WWI 종전후 파리평화회의와 연계하여 1919년 스피츠베르겐회의 개최
- 1920년 2월 9일 미국, 덴마크, 프랑스, 이태리, 일본,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간 스발바르조약 채택
- 1925년 8월 14일 발효
- 2012년 현재 43개국이 조약에 서명하여 당사국 지위 확보
- 대부분 1920년대와 1930년대 서명
- 1994년 아이슬란드, 2006년 체코, 2012년 한국 서명

번호	국명	비준일	번호	국명	비준일
1	네덜란드	1920. 9. 3	23	이집트	1925. 9. 13
2	호주	1923. 12. 29	24	불가리아	1925. 10. 20
3	캐나다	1923. 12. 29	25	그리스	1925. 10. 21
4	인도	1923. 12. 29	26	스페인	1925. 11. 12
5	뉴질랜드	1923. 12. 29	27	독일	1925. 11. 16
6	남아프리카	1923. 12. 29	28	아프가니스탄	1925. 11. 23
7	영국	1923. 12. 29	29	도미니카	1927. 2. 3
8	덴마크	1924. 1. 24	30	아르헨티나	1927. 5. 6
9	미국	1924. 4. 2	31	포르투갈	1927. 10. 24
10	이탈리아	1924. 8. 6	32	헝가리	1927. 10. 29
11	프랑스	1924. 9. 6	33	베네주엘라	1928. 2. 8
12	스웨덴	1924. 9. 15	34	칠레	1928. 12. 17
13	노르웨이	1924. 10. 8	35	오스트리아	1930. 3. 12
14	일본	1925. 4. 2	36	에스토니아	1930. 4. 7
15	벨기에	1925. 5. 27	37	알바니아	1930. 4. 29
16	모나코	1925. 6. 22	38	폴란드	1931. 9. 2
17	스위스	1925. 6. 30	39	러시아	1935. 5. 7
18	중국	1925. 7. 1	40	우쿠라이나	1935. 5. 7
19	루마니아	1925. 7. 10	41	아이스란드	1994. 5. 31
20	핀란드	1925. 8. 12	42	체코	2006. 6. 21
21	아일랜드	1925. 8. 14	43	대한민국	2012. 9. 7
22	사우디아라비아	1925. 8. 14			

- AF 2/ AS 6/ EE 9/ WEO 22/LAC4

- 8개 북극이사회 회원국, 6개 북극이사회 옵서버국 모두 서명

- 잠정옵서버 EU, 한, 중, 일, 이탈리아가 서명

- 43개 서명국중 미, 베네주엘라 제외한 모든 국가가 UNCLOS 당사국

# 스발바르조약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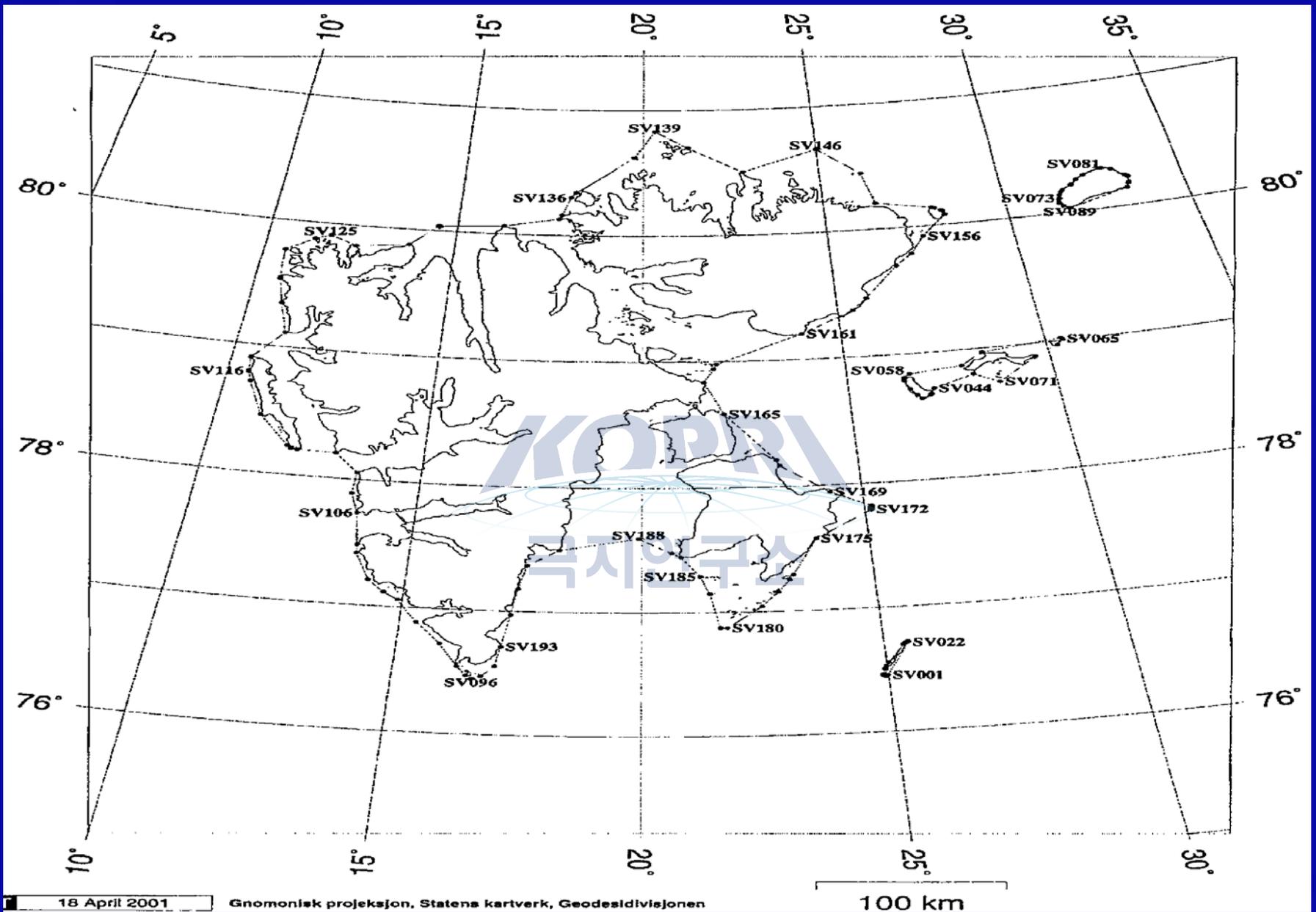
- 전문, 10개 조문, 1개 부속서로 구성
- 스발바르군도에 대한 노르웨이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
- 다만, 조약의 규정에 따를 것이라는 조건 제시
- 주요조건(주권의 제약 요소)
  - 모든 조약당사국의 선박과 국민에게 스발바르군도와 그 영해에서 동등한 어업 및 수렵권 인정
  - 모든 조약당사국 국민에게 스발바르군도 통신시설의 동등한 이용권 부여
  - 스발바르군도 활동에 대한 동등한 세금 부과 및 동 세금의 이용을 스발바르군도 관리목적에 한정
  - 스발바르군도의 평화적 이용(군사적 목적 사용 불가)

## II. 스발바르군도 관리 현황과 조약당사국의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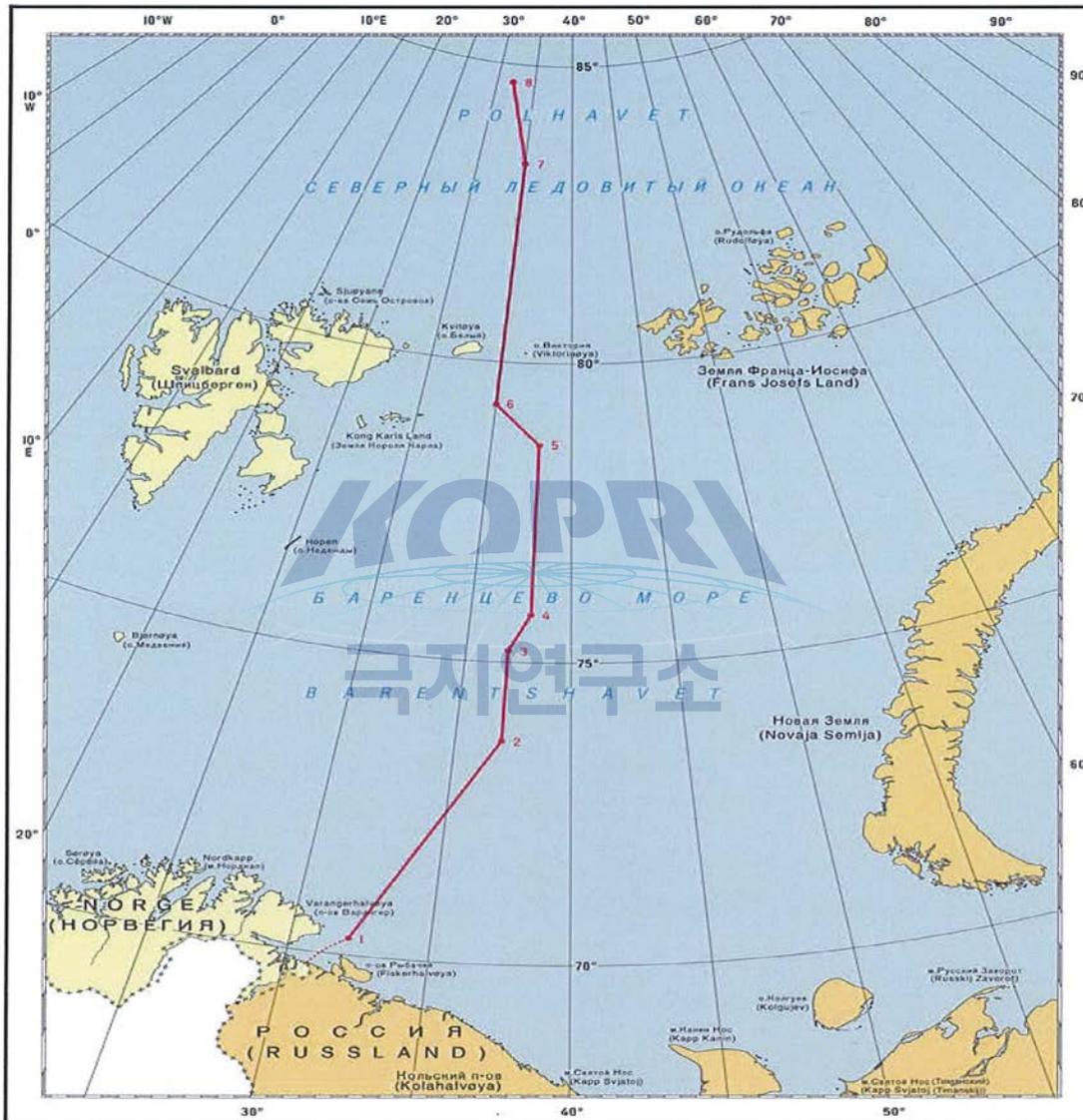
# 스발바르군도 관리 현황

- 1925년 스발바르법과 스발바르광업규칙 제정하여 동 조약 내용 수용
- 조약 발효시점에 영해 4해리 주장, 2003년 12해리로 확대(1970년 /2001년 스발바르군도 직선기선 설정)
- 1977년 스발바르군도 주변에 200해리 어업보호수역 설정(역사적 조업 실적을 바탕으로 쿼타제에 의한 동등한 조업제도 적용, 1993년 이후 불법어업에 대한 물리적 단속 실시, 본토에는 EEZ 설정)
- 1974년 대륙붕 주장하였으나 스발바르군도의 독자적 대륙붕 부인
- 1976년 덴마크와 스발바르 대륙붕과 어업보호수역에 관한 경계획정 협정 체결(스발바르군도 기점 사용)
- 2010년 러시아와 해양경계획정조약 체결(스발바르군도 기점 사용)
- 2006년 CLCS에 스발바르 기점 대륙붕 연장 심의 신청



- 1970년 칙령 83개 기점 ➡ 2001년 규칙 196개 기점 확대





Stereografisk projeksjon  
Geodetisk datum WGS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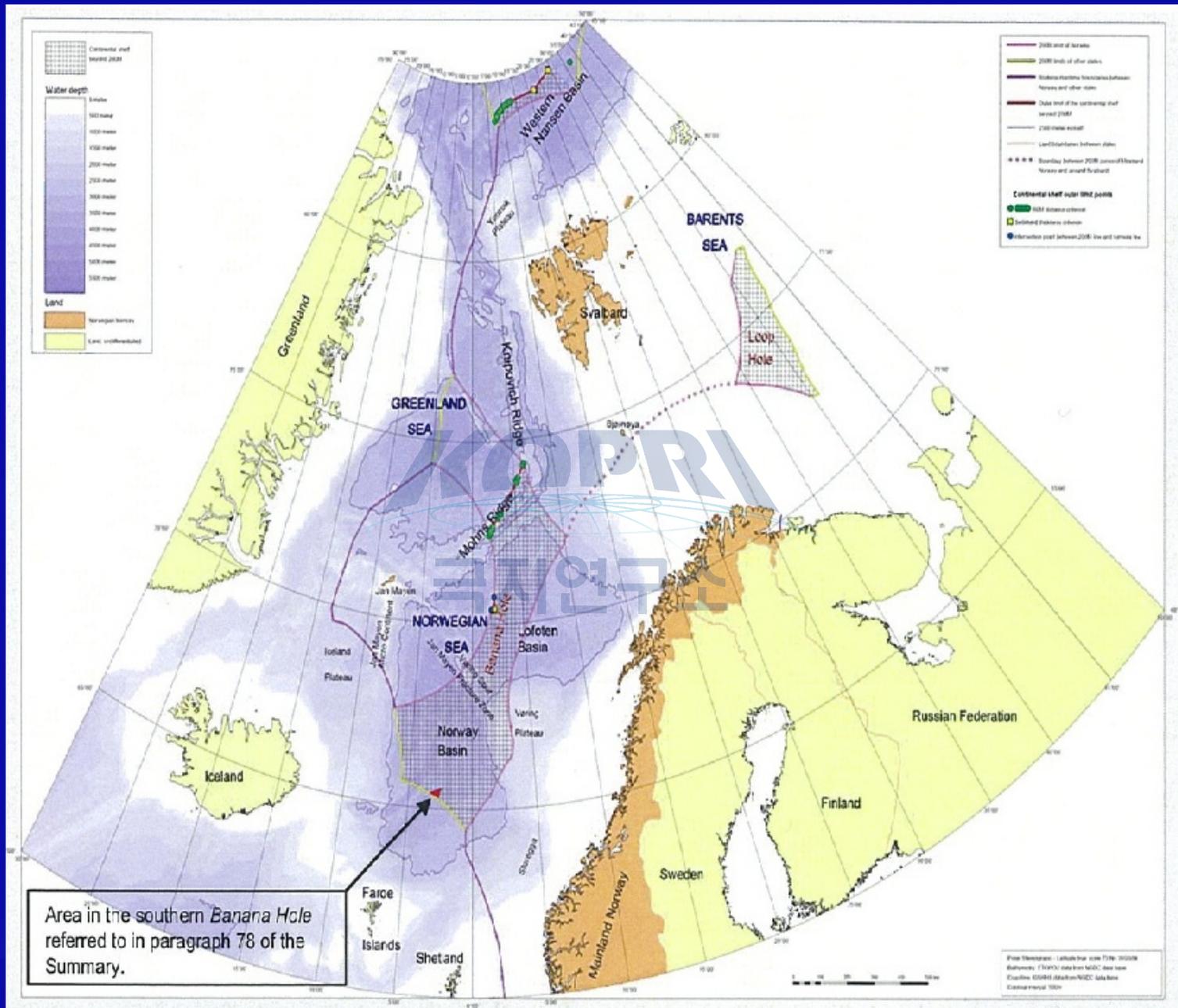
Условные обозначения:  
Линейное обозначение

Стереграфическая проекция  
Система координат WGS-84



— линия разграничения  
Августинингслиге  
..... линия разграничения по Соглашению 2007 года  
Августинингслиге etter Overenskomsten av 2007





# 조약당사국의 태도

## - 노르웨이

- UNCLOS에 따라 스발바르군도에 EEZ 및 대륙붕 설정 가능
- 스발바르조약은 조약 문구상 스발바르군도와 영해에만 적용, 어업보호수역과 대륙붕은 노르웨이의 배타적 관할권 대상
- 조약해석의 원칙상 주권 제약요소는 엄격한 제한적 해석의 원칙 적용 주장
- 스발바르군도는 독자적 대륙붕 없이 본토에서 발달된 대륙붕상에 존재

# 조약당사국의 태도

- 조약서명국 10개국 이 노르웨이 주장에 반대 또는 유보적 태도 표시
- **러시아**: 영해이외의 해양관할권 설정 반대(조약상 근거 부재를 주장. 그러나 2010년 경계획정조약 체결로 입장 전환 추정. 노르웨이 권리에 대해서는 합의 부재)
- **아이슬란드**: 어업보호수역 설정 반대 및 ICJ 제소 경고(2006년 이후 스발바르조약 적용조건으로 해양관할권 확장 가능 인정)
- **스페인**: 어업보호수역 설정 인정하나 동 수역내 단속행위 반대(대륙붕에 대해서는 설정 인정. 스발바르조약상 스페인의 권리 유보)
- **영국**: 어업보호수역과 대륙붕 설정 인정. 스발바르조약의 적용 주장. ICJ 제소 제안 및 2006년 9개국 초청 대책회의 주도)
- **덴마크**: 어업보호수역과 대륙붕 설정 인정. 스발바르조약 적용 주장
- **네덜란드**: 어업보호수역 설정 인정. 스발바르조약 적용 주장

# 조약당사국의 태도

- 미국, 프랑스, 독일: 영해 외측 해양관할권에 대한 �발바르조약상 자국 권리에 대해 유보적 태도 견지
- 특히, 미국은 노르웨이 대륙붕 주장에 대하여 1974년 “미국은 �발바르에 속한 대륙붕 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관한 어떠한 권리를 포함하여 �발바르조약에 따라 미국이 향유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전체적으로 유보한다” 는 입장 표명후 동일한 주장 유지

# III.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 법적 쟁점

- 스발바르조약에 기속되는 노르웨이가 스발바르군도를 기점으로 현재의 국제해양법질서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설정할 수 있는가?
- 새로운 국제해양질서에 따라 노르웨이가 스발바르군도를 기점으로 영해 외측으로 확장한 해양관할권에 대하여 스발바르조약상의 제반 규정이 확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가?(제한적 해석의 원칙 vs. 진화론적 해석의 원칙)

## 노르웨이가 스발바르군도를 기점으로 현재의 국제해양법질서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설정할 수 있는가?

- 43개 조약당사국중 41개국이 UNCLOS 당사국
- 미국도 UNCLOS를 국제관습법으로 인정, 베네주엘라도 UNCLOS에 반하는 국가실행 미실시
- 따라서 조약당사국은 UNCLOS당사국으로서 양 조약의 권리/의무를 동시에 보유
- 또한 조약당사국의 국가실행상 노르웨이의 UNCLOS에 근거한 해양관할권 확장을 원칙적으로 인정
- 스발바르조약상 노르웨이의 주권 제한은 오로지 스발바르당사국간에만 적용됨으로 타국가의 권리/의무 제한 부존재(조약과 UNCLOS 양립 가능)
- 결론적으로 국가실행상, UNCLOS 규정 해석상 노르웨이는 UNCLOS에 따라 스발바르군도 영해 외측에 해양관할권 설정 가능

## 스발바르군도는 독자적 대륙붕을 가질 수 없는가?

- UNCLOS상 대륙붕은 육지의 자연연장 원칙으로서 연안국의 명시적 선언이나 실효적 또는 관념적 점유에 의존하지 않고 육지의 자연연장이 라는 자연적 조건에 따라 부여
- 동 협약 제121조에서 섬도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암석이 아닌 한 다른 영토에 적용가능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갖는다고 규정
- 따라서, 스발바르군도는 노르웨이의 주장과 같이 노르웨이 본토로부터 유래된 대륙붕상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대륙붕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
- 타국과의 경계협정 및 CLCS 심의신청 등 노르웨이의 국가실행에서도 노르웨이의 주장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

## 노르웨이가 스발바르군도를 기점으로 영해 외측으로 확장한 해양관할권에 대하여 스발바르조약상의 제반 규정이 확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가?

- 조약의 해석에 관한 제31조와 제32조는 국제관습법을 반영
- 협약의 비당사국이거나 동 협약 발효전에 채택된 조약 해석에도 적용
- 2009년 ICJ 판결( 니카라과와 코스타리카간 분쟁) 등에서 반복하여 확인
- 제31조는 조약 해석의 일반규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함께 문언적 해석원칙, 문맥적 해석원칙, 목적론적 해석원칙을 제시
- 노르웨이는 문언적 해석원칙을 강조하며 제한적 해석의 원칙(principle of restrictive interpretation)에 입각한 주장
- **비판 1:** 노르웨이의 해석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에서 규정된 해석의 원칙중 문언적 해석에 치중하였을 뿐 문맥적 해석의 원칙이나 목적론적 해석의 원칙은 배제

# 노르웨이가 스발바르군도를 기점으로 영해 외측으로 확장한 해양관할권에 대하여 스발바르조약상의 제반 규정이 확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가?

- **비판 2:** 제한적 해석의 원칙은 1951년 Abu Dhabi 중재사건, 1974년 Nuclear 사건 ICJ판결 및 WTO 분쟁해결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인용되었으나 1978년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사건 ICJ 판결, 2005년 Iron Rhine 중재재판소 판정, 2009년 Costa Rica와 Nicaragua 사건 ICJ 판결에서는 제한적 해석의 원칙을 배제, 진화적 해석의 원칙을 적용
- **비판 3:** 조약 체결 후 조약당사국들의 국가관행상 진화론적 입장에서 조약 적용(영해 폭 확장, 대륙붕과 어업보호수역 설정 인정) 관할권 확대가 인정되면 동시에 주권 제약에 대한 사항도 ➡ 대 적용 가능해야 형평

## 노르웨이가 스발바르군도를 기점으로 영해 외측으로 확장한 해양관할권에 대하여 스발바르조약상의 제반 규정이 확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가?

- **결론:** 조약 체결시점의 당사국 의도는 무주지인 스발바르군도에 대한 주권을 노르웨이에 부여하는 대신 노르웨이로 하여금 스발바르군도와 그 영해에 대하여 타당사국 국민이 노르웨이 국민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어업 및 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수용하라는 것
- 또한 그 당시 국제법상 영토에 대한 해양관할권은 영해만이 인정되던 시점으로서, 그 영해는 영토에 부속된 연안국의 해양관할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 따라서 스발바르군도에 대한 제한된 주권에 근거하여 해양관할권이 확장된다면 그에 따라 기존 영해에 부과되었던 주권의 제약요소도 동시에 확장된 해양관할권에 적용되는 것이 조약의 목적론적 해석에 적합
- 이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의 일반원칙을 충족시키는 것

# 노르웨이가 스발바르군도를 기점으로 영해 외측으로 확장한 해양관할권에 대하여 스발바르조약상의 제반 규정이 확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가?

- ‘육지는 바다를 지배 한다’ 는 국제법원칙
- 이 원칙은 ICJ 판결을 통하여 반복되어 확인되어 온 원칙
- 즉, “육지 영토의 형세는 연안국의 해양권리를 결정함에 있어 시작점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는 판결의 내용과 같이, 스발바르조약에 의거한 노르웨이의 스발바르군도에 대한 주권의 제약은 그 영토에 근거하여 설정된 해양관할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

# IV. 분쟁 해결방안에 대한 검토



- 스발바르군도를 기점 영해 이원의 해양관할권 설정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 측면이나 국가관행적 측면에서 비교적 명료한 결론에 도달
- 그러나 조약의 지리적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노르웨이의 주장이나 이에 반대하는 주장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할만한 명백한 국제법원칙이나 일치된 국가관행이 부존재하여 분쟁 해결 위한 추가 노력 필요
- **국제사법기관을 통한 해결**
  - UNCLOS 분쟁해결절차 적용 부적절(노르웨이 주권의 한계가 쟁점)
  - ICJ 절차 적용(노르웨이 등 22개국 강제관할권 수락. 당해분쟁, 당해 당사국에만 판결 효력이 미친다는 한계 존재)
  - 중재재판은 노르웨이와 타당사국간 분쟁부탁 합의 필요

## - 조약의 개정 또는 해석 합의에 의한 해결

- 조약 본문을 직접 개정하는 방법/ 조약의 의정서를 새로이 채택하는 방법/ 조약을 폐지하고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는 방법/조약해석에 관한 합의문 채택
- 스발바르조약 자체에는 개정절차 부존재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0조의 규정이 적용(모든 당사국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제의를 모든 체약국에게 통고하여 협의 개시)
- 개정된 조약은 새로운 조약의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개정된 조약에 서명한 국가에 대해서만 유효하고, 서명하지 않은 원 조약 서명국에 대해서는 효과 부존재
- 따라서, 개정된 조약의 실질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체 원 조약 체약국의 서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 향후 전망 및 우리의 태도

- 해양자원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걸려있는 노르웨이가 순순히 확장된 해양관할권에 대한 스발바르조약의 적용을 수용하는 것도 기대 난망
- 또한 막대한 자원 잠재력을 가진 스발바르군도 주변수역에 대한 이익을 타 조약당사국이 포기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
- 현실적으로 어업문제는 어업보호수역에 의해 현재 조정되고 있고, 대륙붕 개발도 노르웨이의 제한정책에 따라 탐사조차 수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조약의 해석에 관한 본격적인 조치는 기대 난망
- 다만, 노르웨이가 스발바르군도 해양관할권에 대한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를 본격적으로 주장하거나 스발바르군도 대륙붕에 대한 자원 탐사를 개시하는 경우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연합국가들이 동 분쟁의 해결을 위한 조치 개시 예상

- 우리나라는 동 조약의 당사국으로서 분쟁해결의 추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가야 할 것(북극 진출의 소중한 법적 기반 확보차원에서 접근)
- 특히, 스발바르조약은 원초 서명국과 추가 가입국간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타당사국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위의 논의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보장
- 따라서, 스발바르조약의 쟁점에 관한 타조약당사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법적 논의에 대한 학술논문과 관련 국제판례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아가야 할 것
- 또한, 유럽연합국가에 비교할 때 동 조약문제 논의에 소외되었거나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은 중국, 일본 등 비북극, 비유럽국가간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스발바르조약의 해석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관련 국제회의 또는 학술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Thank You !